

보도시점 2025. 2. 11.(화) 12:00(수요일 조간) 배포 2024. 2. 10.(월)

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 화평법 이행 지원사업 4종 및 화관법 이행 지원사업 3종 대상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권역	일시	장소
수도권	'25.2.12(수), 09:30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
전라·광주권	'25.2.13(목),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충청·대전권	'25.2.14(금), 14:00	모임공간 국보 대회의실
부산·울산·경남권	'25.2.19(수), 14:00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홀 대연회장
대구·경북권	'25.2.20(목), 14:00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

① 화평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4종 소개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10~100톤 미만)이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을 전문가가 진단(컨설팅)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 * (기존화학물질 등록)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함
 - 1단계 등록(1천톤 이상 or CMR(암돌연변이생식독성물질), ~’21년), 2단계 등록(100~1,000톤 미만, ~’24년), 3단계 등록(10~100톤 미만, ~’27년), 4단계 등록(1~10톤 미만, ~’30년)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의 경우 2단계 등록유예물질 172종(172개 협의체)에 대해 등록 전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직접 생산하여 산업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2단계 등록유예물질 226종(226개 협의체)을 지원했고, 올해 환경부는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산업계에서 필요한 시험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국내외 공개된 정보 및 문헌자료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도움센터에 공개한다.

지난해에는 사전신고된 물질 2,984종에 대한 유해성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고, 올해도 지난해까지 사전신고된 물질들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유해성정보 구축을 추진한다.

끝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류 작성 진단(컨설팅 300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20건)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 기업이 더욱 늘어난다.

※ (신규화학물질 신고) 화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여야 함

② 화관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3종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이 지원사업의 개시 이래 매년 약 300개의 중소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았고 시설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safeche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맞춰 적절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검사·안전 진단 기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맞춤형 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법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에 대한 제도 이행 지원의 시작”이라며,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계가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른 제도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
2.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이행 지원사업 주요 내용.
3. 중소화학업체 화관법 제도이행 지원사업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770)
		담당자	팀 장	지용상 (02-6050-1301)
		담당자	사무관	송동복 (02-6050-1302)
	환경부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 장	심광현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이창언 (044-201-6838)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이숙진 (032-590-5560)
		책임자	부 장	박창배 (032-590-4990)
		책임자	부 장	이정선 (032-590-497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설명회 개요**

○ (추진 배경)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존 화학물질 3단계 등록(10톤~100톤 미만) 등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산업계 대상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 및 현장상담소 운영

○ (일시 및 장소) '25.2월 약 1주간(2.12~2.20)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

권역	일시	장소(수용인원)
수도권	'25.2.12(수), 09: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300명)
전라·광주권	'25.2.13(목),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80명)
충청·대전권	'25.2.14(금), 14:00	모임공간 국보 대강의실(120명)
부산·울산·경남권	'25.2.19(수), 14:00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홀 대연회장(350명)
대구·경북권	'25.2.20(목), 14:00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120명)

□ **세부일정**

시간			세부내용
오전(수도권)	오후(수도권 외)	소요시간	
09:30~09:35	14:00~14:05	5분	인사말
09:35~10:15	14:05~14:45	40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계 지원방안
10:15~10:55	14:45~15:25	40분	「화학물질관리법」 산업계 지원방안
10:55~11:00	15:25~15:30	5분	자리 정비
11:00~12:00	15:30~16:30	60분	1:1 현장 상담소 운영

1.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컨설팅 등)

- (목적)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27년, 10~100톤)이 기한 내 등록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 지원
- (주요내용)
 - 공단이 선정한 전문컨설팅사와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협의체 운영부터 등록까지 전과정 컨설팅, CSR 및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등
 - 산업계도움센터를 운영하여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선임/해임 업무 수행, 민원상담 등
 - K-CHESAR, 산업계도움센터 등 각종 시스템 구축·개선
 - 화평법 이행을 위한 산업계 설명회, 안내서 배포 등 교육·홍보

2.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 (목적)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 산업계가 널리 저렴하게 사용(기업 부담 3~30%)토록 지원
 - ※ 컨설팅 과정에서 업체가 시험자료 생산이 필요할 경우 연계 지원
- (주요내용)
 - 수요조사를 통한 산업계 맞춤형 시험자료 생산,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한 위탁생산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통합관리 서버(K-Reach 하부) 구축
 - 정부 소유 시험자료의 저작권 및 국유재산 등록 등 관리

3.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

- (목적) 산업계의 시험자료 생산 필요성 검토(꺾분석) 등에 필요한 시험결과, 원문 출처, 무료여부, 생략사유서 등을 조사하여 제공
- (주요내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미국, 일본, EU, OECD 등)에서 공개된 정보 및 문헌자료 등을 조사하여 화학물질별 등록신청 자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자료 항목별 유해성정보 DB 작성 및 제공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유해성평가보고서 내 시험항목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의 예시 작성 및 제공

4.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

- (목적)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관리(생산·전달·활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안착 지원
-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조정(0.1→1t), 신고제도는 EU CLP 기반하여 개선
- (주요내용)
 - 화평법 개정에 따른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운영 및 지원('25.1.~)
 - 신고된 신규화학물질 국내외 유해성정보 검토 및 공개
 - 중소기업의 신고 이행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설명회, 교육 등

1.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보조금 지급)

- (목적)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조속한 정비 유도 및 화학사고 예방
 - (주요내용) 취급시설 개선 비용(설비구입, 설치공사비)의 70% 이내 지원
 - (신청자격)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청기간) 2025.1.20.(월) ~ 2025.2.28.(금)(진행중)
 - (지원규모) 지원업체별 최대 4,200만원('25년 총 5,741백만원)
 -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에서 신청
- ※ 문의처 : 1899-1744 연결 후 “0번”(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담당자)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컨설팅 제공)

- (목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을 통한 사업장의 화학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규제 대응역량 강화
- ※ 사업장 종사자가 직접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능력 향상 유도
- (주요내용) 사업장 맞춤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 최대보유량 산정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 판단
 - 사고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계획 관리 등 신규 작성 지원
 - 취급시설·물질 등 변경사항에 따른 변경 작성 지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 지원

3.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컨설팅 제공)

- (목적) 중소규모사업장의 취급시설 자체 안전·운영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예방) 능력 향상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취급시설 관련 기술지원
 -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사전 서면자료 준비 및 작성방법 안내
 - 시설 안전관리 방법 교육 및 지원 결과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실시
 - 검사·진단 장비를 활용한 배관 접합부 등 누출 여부 점검